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61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임성준(공판)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3.경 부천시 C건물 8층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진 촬영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 8장을 사용 권한 없이 무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30

으로 복제하여 온라인 상품 판매글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지마켓, 옥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캡처 사진, 지마켓 스토어 캡처 사진, 옥션 스토어 캡처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진 이미지(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가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이미지인 점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이미지에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를 워터마크 형식으로 삽입하여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점, 이 사건 사진 촬영에 사용된 유리테이블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인 점,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3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작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게시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였다.

판사 박인범 _____